

#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 북 구  
(여성가족과)

#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안 번호	151
----------	-----

제출년월일 : 2023. 9.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 1. 제안이유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맞벌이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현재 운영 중인 가정어린이집 2개소, 민간(관리동)어린이집 1개소의 국공립 전환을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설치와 기존에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중 위탁기간이 2024년 상반기에 만료되는 시설의 재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신규위탁 시설

연번	시설명 (가칭)	소재지 (행정동)	정원/현원	면적	비고
1	돈암이수 어린이집	북악산로 844, 102-102 (돈암2동)	20/20	84.97㎡	전환 설치 (민간,가정→국공립)
2	드림 어린이집	동소문로34길24, 106-109 (돈암1동)	20/20	114.66㎡	무상사용기간: 10년
3	두산비쥬 어린이집	오패산로 46 관리동 1층 (월곡1동)	45/31	255㎡	개원예정일: 2024. 3. 1.

1) 위·수탁기간 : 개원일로부터 5년(예정)

2) 수탁기관 선정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기존 설치·운영자에게  
최초 운영권 보장

### 나. 재위탁 대상 시설

연번	시설명(원장)	소재지(행정동)	현 위탁체(대표)	정원/현원	현 위·수탁기간
1	동선 어린이집 (정민자)	아리랑로 27-24 (동선동)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 (김현훈)	59/38	2019. 3. 1. ~ 2024. 2. 29.
2	루나밸리 어린이집 (백희경)	월곡로14길 26 관리동 1층 (월곡2동)	개인 (백희경)	30/28	
3	목화 어린이집 (권현수)	오패산로4길 39-1 (월곡2동)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합회 (김석남)	78/61	
4	안암 어린이집 (김재순)	고려대로8길 5 (안암동)	학교법인 승가학원 (김영철)	116/87	
5	정릉1동 어린이집 (송선희)	정릉로 300 (정릉1동)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이규정)	64/47	
6	새봄빛 어린이집 (오수연)	송인로 50 (길음2동)	개인 (오수연)	65/60	2019. 4. 1. ~ 2024. 3. 31.
7	아트리치 어린이집 (고순자)	돌곶이로8길 22 (석관동)	개인 (고순자)	107/103	
8	나리 어린이집 (남경희)	화랑로 242-5 (석관동)	개인 (남경희)	34/29	2019. 5. 1. ~ 2024. 4. 30.
9	월곡 어린이집 (김윤자)	오패산로16길 23 (월곡1동)	대한예수교장로회 영광교회 (김성제)	65/50	
10	종암 어린이집 (송영정)	종암로23길 11 (종암동)	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진흥회 (김광환)	110/62	
11	해솔 어린이집 (엄귀화)	돌곶이로34길 4-14 (장위2동)	개인 (엄귀화)	42/26	

연번	시설명(원장)	소재지(행정동)	현 위탁체(대표)	정원/현원	현 위·수탁기간
12	가온누리 어린이집 (박 나 래)	송인로 50 (길음2동)	개인 (박 나 래)	88/80	2019. 6. 1. ~ 2024. 5. 31.
13	달빛하나 어린이집 (이 현 주)	장월로3길 47 (월곡2동)	개인 (이 현 주)	71/64	
14	돈암2동 어린이집 (장 효 정)	성북로4길 52 (돈암2동)	재단법인 청소년과사람사랑 (박 상 일)	75/56	
15	삼선 어린이집 (최 현 주)	삼선교로4길 147 (삼동)	주식회사 곰표 (김 혁)	62/52	
16	삼선뜰 어린이집 (정 수 현)	보문로29길 86 (삼선동)	개인 (정 수 현)	85/74	
17	성북 어린이집 (최 명 숙)	성북로4길 13-2 (성북동)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이 재 광)	78/58	
18	큰나무 어린이집 (이 진 실)	화랑로18길 74 (월곡2동)	재단법인 그리스도의 교회 (이 준)	55/28	

1) 위·수탁기간 : 위탁 기간 만료일 이후로부터 5년(예정)

2) 수탁기관 선정 : 2023년 4차, 2024년 1차, 2차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및 선정

#### 다. 위탁 사업의 범위

- 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 2)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 3)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관련근거

#### 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 기준 등)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 1. 17., 2011. 6. 7., 2011. 8. 4., 2018. 12. 11., 2020. 12. 29.>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 나.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 등)

-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